

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

[시행 2023.04.10]
(제정) 2023.04.10 조례 제1908호

관리책임부서명 : 문화예술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031-940-8522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[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](#)」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·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문화예술”이란 「[문화예술진흥법](#)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.
- “장애예술인”이란 「[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](#)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파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 수립 등)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- 장애예술인 창작·전시·공연 활동의 지원
-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
-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구축·운영
-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단,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단체 및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)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
-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
- 장애예술인 공연, 전시 및 시설 대관
-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
-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(2023. 4. 10. 조례 제1908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